

무보증구매론 계약서

(중개 등에 따른 제3자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이하 “제3자 구매기업”이라 함)은 제3자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의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중개(유사거래 포함)하여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대금(이하 “거래대금”이라 함)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은 제3자 구매기업이 은행의 “무보증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 구매기업”이라 함은 특정 공간(방송, 매체, 온라인 물, 백화점 등, 이하 “판매공간”)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기업 간의 물품 등의 거래를 중개(유사 형태 포함)하고 수취한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 “불특정 다수”라 함은 제3자 구매기업이 제공하는 판매공간을 통하여 판매기업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다수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 “판매기업”이라 함은 제3자 구매기업의 판매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고 제3자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 결제를 받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 “벤더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제3자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거래자료를 말하며,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제3자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을 말합니다.
- “제3자 구매기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제3자 구매기업이 거래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거래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선입금 등”이라 합니다.
- “벤더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 한 거래대금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지급승인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선입금 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일반거래”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 및 은행의 지급승인과 동시에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매매보호거래”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제3자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절차 및 은행의 지급승인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거래자료 전송, 선입금 등 무보증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3조(이용한도 및 지급보증)

제3자 구매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취한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해 전송하는 승인금액에 대하여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승인금액의 총 잔액(이자 미포함, 이하 동일)은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있으나, 판매기업(들)의 선입금 등 총 잔액은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4조(승인명세의 전송 등)

승인명세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 제3자 구매기업은 허위매출 및 현금유동성 거래가 아닌 본인에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거래대금 지급 용도로만 본인 책임하에 승인명세를 전송하기로 합니다.
- 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승인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승인명세 상 결제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
- 제3자 구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승인명세를 전송,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승인명세등록신청서” 및 해당 승인명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3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거래대금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 제3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하도급거래 공평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거래대금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 5조(지급승인)

- ① 은행은 제3자 구매기업의 지급승인에 대하여 판매기업을 거래대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지급승인을 함에도, 은행은 제3자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지 않습니다.
- ③ 제3자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에 따라 지급승인금액 전액에 대하여 판매기업에 대한 변제무를 부담합니다.
- ④ 은행은 지급승인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6조(승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

- ① 제3자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에는 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승인 이후에는 판매기업의 물품 등의 하자, 전산 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에 지급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도 가능하나, **승인명세의 판매기업, 승인금액, 결제일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제3자 구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하거나 제3자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지급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한 하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은행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승인명세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가.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등을 실행한 경우
 - 나.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
- ④ 매매보호거래시 결제일 전 은행 영업일까지 권리이전(인수)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결제일에 자동으로 승인명세 및 지급승인이 취소됩니다.
- ⑤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전송 시,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7조(지급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제3자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2. 본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3.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5. 제3자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본 계약에서 정한 지급승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7.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대금 지급 용도 외의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8. “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승인명세 전송하는 경우
9. 원 약정서 “제 6조(감액, 정지 조항)”에 의하여 제3자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10.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경우

제 8조(신용공여 기간)

제3자 구매기업이 이 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급승인기간은 최장 (_____)일 범위내에서 하기로 합니다.(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최장 180일 이내에서 직접 기재합니다.)

제 9조(개별대출의 실행)

- ① 제3자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판매기업이 선입금 등을 신청 시, 제3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또는 벤더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판매기업(들)의 선입금 등 총 잔액이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입금할 수 없습니다.
- ② 판매기업이 선입금 가능한 비율은 승인명세 건 별 최고 (_____)% 이내로 합니다.(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선입금 가능비율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③ 선입금 등은 승인명세 전송 당일부터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승인명세 상 선입금 가능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선입금 가능일부부터, 매매보호거래방식인 경우에는 제3자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등록일부부터 가능합니다.
- ④ 선입금은 승인명세 상 원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한도)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 ⑤ 개별대출의 기한은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개별대출의 만기일이 약정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 시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 10조(대출의 이자)

- ① 대출이자는 선입금 등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 ② 선입금에 따른 대출이자 는 판매기업이 부담하며, 거래대금 입금시 징구합니다.



제 11조(결제계좌의 지정)

제3자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상환 및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제3자 구매기업 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제 12조(개별대출의 상환 및 대금의 지급)

- ① 개별대출금의 상환자원과 거래대금의 지급자원은 은행영업시간까지 제1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② 개별대출금은 만기일에 제11조에서 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상환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거래대금은 결제일에 제11조에서 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지급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결제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은 개별대출금 상환을 우선 처리한 후 거래대금 지급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⑤ 개별대출금의 상환처리시 상환자원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 선입금 건별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부분상환 처리 하기로 합니다.
- ⑥ 거래대금의 지급은 결제계좌에 결제할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되며, 결제대금이 당일 지급할 거래대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에 달할 때까지 승인명세 건별 전액결제만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⑦ 결제일에 지급가능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미결제된 승인금액은 당일 이후에는 지급처리 되지 않고 익영업일에 자동으로 승인취소합니다.
- ⑧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개별 대출 상환 및 구매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 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⑨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선입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제 13조(지급보류 등록)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이하 "압류"라 함) 등이 제3자 구매기업에게 송달되는 경우, 제3자 구매기업의 신청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판매기업이 선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명세를 취소한 후 제3자 구매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2. 판매기업이 전액 선입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하여 압류대상 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선입금 등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하여 지급보류 등록하는 경우
 - 가. 승인명세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 하기로 합니다.
 - 나. 지급보류 등록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 시 제3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 다.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3자 구매기업에게 압류가 송달된 경우 제3자 구매기업은 지체없이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제3자 구매기업이 통지를 지체하여 이 계약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경우 제3자 구매기업이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4조(수수료의 운영기준)

무보중구매론 이용 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여러 건을 한번에 지급승인하는 경우에도 1건이 아닌, 지급승인 건별로 모두 징구합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하고 수수료금액을 직접 기재합니다)

부담주체(택1)	약정수수료	징수시기
<input type="checkbox"/> 판매기업 <input type="checkbox"/> 제3자 구매기업	원	판매기업부담시 : 대금입금시 차감 제3자 구매기업부담시 : 결제일에 징구

제 15조(계약의 체결 및 변경)

- ① 제3자 구매기업은 이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제3자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필요한 경우 은행과 제3자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5조(위험부담·면책)"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7조(계약의 효력)

-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이 계약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④ 은행과 제3자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8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9조(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제3자 구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인)

주 소 :

[제3자 구매기업(채무자)]

기업명 : _____(인)

주 소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 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바, 이 계약을 체결함.	제3자 구매 기업	(인)
--	-----------------	-----

